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박성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672
----------	-------

발의연월일 : 2026. 2. 9.

발 의 자 : 최혁진·박성준·정혜경
윤종오·조계원·민형배
전종덕·김문수·박민규
김준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보호 등 공공복리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계약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도록 하고, 지역사회에의 공헌이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에 있어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 촉진에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4(사회적 가치의 실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에 있어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보전, 포용성, 인권, 공정성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에 있어 사회연대경제조직(「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을 말한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6조의4(사회적 가치의 실현) ①</u> <u>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u> <u>담당자는 계약에 있어 고용 창</u> <u>출, 취약계층 보호, 지역경제</u> <u>활성화, 환경보전, 포용성, 인</u> <u>권, 공정성 등 사회적 가치를</u> <u>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u> <u>한다.</u> <u>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u> <u>약담당자는 계약에 있어 사회</u> <u>연대경제조직(「사회적기업 육</u> <u>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u> <u>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u> <u>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u> <u>조합,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u> <u>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u> <u>따른 마을기업 및 「국민기초</u> <u>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u> <u>자활기업을 말한다)의 참여를</u> <u>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u> <u>한다.</u>